

2. 주요골자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추경 (증△감)	증감율 (%)	
총계	135,466,531	125,379,612	10,086,919	8.1	
일반회계	111,002,739	103,806,530	7,196,209	6.9	
특별회계	소계	24,463,792	21,573,082	2,890,710	13.4
	의료보호기금	913,748	900,716	13,032	0.1
	새마을소득지원사업	210,818	210,818	0	
	주차장	23,339,226	20,461,548	2,877,678	14.1

○ 주요재원

- 일반회계 _____ 7,196,209 천원
- 세외수입 7,159,198 천원
- 보조금 37,011 천원
- 특별회계 _____ 2,890,710 천원
- 의료보호기금 이월금 13,032 천원
- 주차장 이월금 2,877,678 천원

일본국지방의회의원에 대한훈장수여건의(안)

의안 번호	70
----------	----

발의년월일 : 1996. 6. 15.

발 의 자 : 최수영 의원의 9명

1. 주 문

일본국내 재일교포의 지방참정권 부여에 대하여 지방의회중 최초로 결의한 오사카부(大阪府) 기시와다시의회(岸和田市議會) 의원중 공헌이 많은 의원에게 훈장수여를 해당기관에 건의함.

2. 제안이유

가. 일본 지방의회중 최초로 「定住外國人에 對한 地方參政權 附與決議案」을 의결('93.9.9.) 하여 일본 열도에 파문을 일으켰으며

- 나. '96년 5월 현재 3,300여 지방의회중 1,743 지방의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의결되어 가속화되고 있으며
- 다. 참정권 의결 확산으로 오사카부에서는 만 70세 이상 정주의국인에게 '96년 7월부터 월 1만엔의 노령연금을 지급기로 결정하였으며
- 라. 위와 같은 참정권 결의안에 공헌한 「고도부끼 이쎄이」 (壽一誠) 前議長 「요시노 요이찌」 (吉野良一) 日韓友好 親善議員聯盟會長에게 훈장수여를 건의함

3. 관계법규

대한민국 상훈법 제2조 (서훈의 원칙)-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

일본국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훈장수여 건의문

우리구 의회에서는 의원 원외활동으로 국제친선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에 거주하는 70만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향상과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일본국 오사카부(大阪府) 기시와다시(岸和田市)의회와 우리 구의회는 1992년 10월 22일부터 양 의회간 친선교류를 통하여 문화교류와 협력증진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1. 기시와다시의회는 우리구의회를 통하여 1993년 9월9일 지방의회 최초로 “定住外國人에 對한 參政權을 附與하는 對政府建議案”을 가결함으로써 일본 열도에 파문을 일으켜 다른 지방의회로까지 확산되어 있으며, 1995년 2월 28일 日本最高裁判所에서도 지방참정권 인정을 판시한 바 있으며
2. 참정권 결의를 계기로 오사카부(大阪府)에서는 '96회계연도가 개시되는 7월 1일부터 70세 이상 정주의국인에게 매월 1만엔(한화 73,000원)의 노령연금을 지급기로 결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
3. 재일교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오사카부내 기시와다시의 참정권 결의 결정이 다른 지방의회로 파급되고 있어 1996년 5월 현재 3,300여 지방의회중 이미 1,743개의 다른 의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결의(53%)되었고 머지않아 나머지 의회에서도 결의되리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이는 곧 일본 법률의 개정으로 일본 사회에서의 재일교포의 입지와 지위향상으로 귀결되어 질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계기마련과 일본 전국으로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오사카부 기시와다시의회 의원중 공로가 많은 「고도부끼 이쎄이」 (壽一誠) 前議長과 「요시노 요이찌」 (吉野良一) 岸和田市議會 日韓友好親善議員聯盟會長에게 대한민국 상훈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훈장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영등포구의회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건의합니다.

1996. 6. 17.

영등포구의회 의원 일동